

## 5. 勤勞者住宅 入住資格 緩和

資料提供：建設部

- 정부는 근로자주택공급이 근로자들의 주거안정과 산업평화의 정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, 근로자주택의 입주자격등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주택건설시행지침을 개정·시행하기로 하였다.
- 그 주요내용을 보면
  - 근로자주택의 입주대상업종을 현행 제조업, 운전업 및 청소직에서 제조업, 운송업 및 위생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(세부내용 별첨)
  - 부양가족이 있는 1년이상 무주택세대주인 미혼근로자와 기혼근로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에게도 입주자격을 인정하므로써 가게의 주수입원이면서도 기존 제도하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던 미혼자 및 기혼여성근로자도 근로자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며
  - 임대수준을 현행 '91년도 월평균임대 100만원이하에서 매년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로 변경하므로써 임대수준의 상향조정을 도모하고 매년 변화되는 임대수준에 맞추어 적절히 운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.
  - 또한 주택의 규모도 18평까지 허용하여 부양가족이 많은 근로자를 위한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하였으며
  - 기업의 근로자주택 분양신청시 시장·군수를 거치지 않고 사업주체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업종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도 확인이 가능한 서류중 선택하여 제출토록 하는 등 현행제도상의 규제사항을 대폭 완화하여
  - '93. 3. 22부터 변경된 지침에 따라 근로자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.

## 제조업·운송업 및 위생서비스업의 범위

### 1. 제조업

한국표준산업분류(통계청고시 제91-1호, 91. 9. 9)의 대분류 D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

### 2. 운송업(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60)

#### 가. 도시간 철도운송업(60100)

- 도시간 또는 교외간 철도차량에 의해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 
(철도차량건인 및 전철활동등 관련활동 포함)

#### 나. 정기노선여객육상운송업

- 구역내 철도운송업(60211)
- 시외버스, 시내버스 운송업(60212, 60213)
- 택시운송업(개인택시운송업 제외)(60221)
- 정기노선 도로화물 운송업(60231)

#### 다. 수상운송업

- 내항여객 및 화물운송업(61101, 61102)
- 외항여객 및 화물운송업(61103, 61104)
- 내륙수상여객 및 화물운송업(61201, 61202)

#### 라. 운전관련 서비스업

-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(63011)
- 수상화물취급업(63012)

### 3. 위생서비스업(90)

- 일반폐기물 수집, 처리업(90011)
  - 정기폐기물 수집, 처리업(90012)
  - 하수시설 관리운영업(90021)
  - 분뇨수거 및 처리업(90022)
  - 축산폐기물 수집, 처리업(90023)
  - 폐수처리업(90024)
  -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위생 및 서비스업(90090)
  -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가로환경미화원, 지역환경미화원등 청소직근로자
- ※ 연탄제조업은 '91. 9. 9, 한국표준산업분류개정으로 제조업에서 광업으로 변경되었으나 근로자주택 입주대상자격을 계속 인정함.